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판결문·결정문 등의 의무적 공개〉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481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판결문, 결정문 등의 의무적 공개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7. 15.
3. 회 부 일 : 2025.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도 심리와 판결을 공개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심리 및 판결이 공개되고 기록 열람이 가능함.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이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권의 신뢰를 높이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사법부의 투명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 3).

Ⅲ. 검토의견

1. 판결문, 결정문 등의 의무적 공개

- 개정안은 확정된 판결문, 결정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을 의무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재판기록 중 개인정보나 국가안보 등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하여는 가명처리 및 비식별 처리를 하도록 하며, 재판기록의 공개 및 기록의 효율적인 열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57조의3).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7조의2(재판기록의 공개) ①</u> <u>각급 법원은 확정된 판결문, 결정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을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공개하는 경우 기록의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비식별 처리를 하여야 한다.</u>

<u><신 설></u>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2. 국가안보,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기록 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의3(전자적 재판기록 공개 체계의 구축·운영) 법원행정처는 제57조의2에 따른 재판기록의 공개 및 기록의 효율적인 열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열람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널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선고 당시 법정에서의 판결문 공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당해 판결 내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

송법」 또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 판결문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¹⁾

-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²⁾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³⁾ (이하 “판결서등”이라 함)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음.

1) 김주석,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사법정책연구원, 2023., pp9.~11.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결서 등”이란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제1호), ②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제2호), ③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 ④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제4호), ⑤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4)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음.

한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⁵⁾에 따르면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

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

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제1호), ②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③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 ④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4호), ⑤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5호), ⑥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6호), ⑦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7호)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한할 수 있으나,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⁶⁾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사유)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기각)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음.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의 경우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한편, 「민사소송법」 제162조⁷⁾에 따르면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

- 6)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7)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 또는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열람이 금지됨.

<현행법상 판결서 및 소송기록 열람·등사 대상>

	대상	요건	근거 규정
형사	판결서 등	▶ 누구든지 ▶ 목적 제한 x ▶ 재판이 확정된 판결서, 증거목록, 법원 제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등 ▶ 열람 및 복사 가능 ▶ 제한 사유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소송기록	▶ 누구든지 ▶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 ▶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 ▶ 열람 또는 등사 제한 사유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민사	판결서	▶ 누구든지 ▶ 확정·미확정 판결 ▶ 목적 제한 x ▶ 열람 및 복사 가능 ▶ 소액사건 심판 판결서, 상고심 심리불속행 사유 또는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상고기각 판결서는 제외 ▶ 변론 공개 금지 사건 판결 열람 및 복사 전부 또는 일부 제한 가능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소송기록	▶ 누구든지 ▶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 ▶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 열람 신청(복사는 불가) ▶ 열람 신청시 소송관계인의 동의 필요 ▶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한 소송기록은 제한	「민사소송법」 제162조

○ 개정안은 각급 법원으로 하여금 확정된 판결문, 결정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을 일반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이러한 재판기록 등의 공개를 위한 온라인 열람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결서등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보다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법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각급 법원이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대상을 판결문, 결정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넓은 측면이 있으며 공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결정은 주로 소송 절차적 신청에 대한 재판 종류의 하나로서 「민사소송법」 제224조⁸⁾에 따르면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하거나 이유를 생략할 수 있음. 한편 「형사소송법」 제38조⁹⁾에서는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결정은 판결과는 달리 소송 절차의 부수·파생된 사항이 대부분

8) 「민사소송법」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9) 「형사소송법」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으로 그 대상이 지나치게 넓은 측면이 있고, 설령 문서제출명령 거부결정과 같이 결정서가 작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할 공익상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을 의무적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규정과의 해석을 통해서도 이를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서 및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국가 및 사회안정 유지, 개인의 기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판결서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열람 및 복사의 예외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과의 충돌 및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 침해, 국가 또는 기업의 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셋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미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27. 12. 3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¹⁰⁾, 가사·소년 사건의 열람 등사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¹¹⁾ 및 「소년법」¹²⁾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

10)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일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 ⑧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1) 「가사소송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조서(調書)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
 2. 기록의 열람·복사
-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

하여 볼 때, 법원의 조직·인사·기능 등을 규율하는 「법원조직법」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법 체계적
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법원행정처는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 등과 달리 재판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경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영업
비밀, 인격권 등의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고, 공개 범위에 있어서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정 체계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71

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2)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